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 및 보고 의무 민간 확대 등》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42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제220694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 등 제공 요청(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2
나.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 및 보고 의무 민간 확대 (안 제48조 및 제80조)	17

I.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제220694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범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6.

다. 회 부 일 : 2024. 12.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턴키 등 심의에 대한 입찰 비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위원 위촉 시, 연임위원 및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을 연임하거나 위촉하기 전,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검증된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아울러, 건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보고 의무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서 오류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고, 시정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및 제80조).

3. 검토의견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범죄 경력 등 제공 요청(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국방부장관은 위원 또는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위원 후보자”라 한다)의 능력과 자질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범죄경력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② (생략) <u><신설></u>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시 발주청은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범죄경력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 평가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와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함)에 대하여 살펴 보면,

먼저, 심의위원회¹⁾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함)와 시·도에 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함)가 있고,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음.

심의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중앙심의위원회는 600명 이내, 지방심의위원회는 250명 이내(특별시는 300명 이내), 특별심의위원회는 300명 이내의 공무원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됨.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

구분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장: 1명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위원장: 1명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위원: 600명 이내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 필요시 1/5 범위에서 사 안별로 일시적 추가 임 명·위촉 가능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50명 이내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특별시는 300명 이내) ※ 필요시 1/5 범위에서 사 안별로 일시적 추가 임 명·위촉 가능	-위원장: 1명 (국방부장관이 지명) -부위원장: 1명 (국방부장관이 지명) -위원: 300명 이내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위원 자격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일 반직 고위공무원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다른 시·도의 지방심의 위원회 위원 -특별심의위원회 위원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 는 사람 -해당 분야의 전문가	-국방부의 5급 이상(일반 직 고위공무원 포함) 또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영관급 장교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	민간위원: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기준정비분과 (100명 이내), 설계심의분 과(400명 이내) 구성·운영 가능 -소위원회는 5명~40명으 로 구성·운영 가능	-분과위원회: 지방설계심의 분과(50~70명) 구성·운영 가능 ※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계심의분과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 위원으로 일시적 추가 임 명·위촉 가능 (지방설계심의분과 위원 정수의 2/5 이내)	-분과위원회: 특별설계심의 분과(50~70명) 구성·운영 가능 ※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계심의분과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 위원으로 일시적 추가 임 명·위촉 가능 (특별설계심의분과 위원 정수의 2/5 이내)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심의사항으로는 중앙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및 건설기술 정책, 융·복합기술 활성화,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 등 국가적인 차원의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방심의위원회와 특별심의위원회는 총공사비가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방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과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하며,

계약 법령과 관련된 각 심의위원회의 공통적인 심의사항으로는,

대체 가능한 설계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이의 심의²⁾, 대형공사·특정 공사의 입찰방법·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³⁾,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시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⁴⁾,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또는 설계의 수정⁵⁾, 기술제안입찰 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점수 평가⁶⁾ 등이 있음.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8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3.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뢰받은 기술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 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구분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기능 (심의 사항)	1. <u>기본계획</u> 및 <u>건설기술 정책</u>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u>융·복합한 기술의 활성화</u>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u>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u>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u>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 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 계획</u>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u>건설기준</u>”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u>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u> 및 <u>공사시행의 적정성</u>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u>설계 및 시공</u>에 관한 사항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u>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u>에 관한 사항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뢰받은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제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구분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u>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u>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u>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u>에 관한 사항
	5. 「<u>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u>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u>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u>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u>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u>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u>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u>설계의 적격 여부</u> 및 <u>설계점수 평가</u>에 관한 사항 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u>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u>에 관한 사항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	2.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u>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u>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u>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u>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u>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u>,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u>설계의 적격 여부</u> 및 <u>설계점수 평가</u>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u>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u>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	2.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u>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u>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u>에 관한 사항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u>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u>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u>설계의 적격 여부</u> 및 <u>설계점수평가</u>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u>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u>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

구분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 술제안입찰의 <u>입찰방 법</u>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 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u>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 가</u>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 른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u>기술제안서 또 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u>에 관한 사항	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u>입찰방법</u>, 낙 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 설계자 결정방법에 관 한 사항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 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u>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 가</u>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 른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u>기술제안서 또 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u>에 관한 사항	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 술제안입찰의 <u>입찰방 법</u> 및 그 <u>심의기준</u>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3조제3항에 따 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u>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 가</u>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5조제4항에 따 른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u>기술제안서 또 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u>에 관한 사항
	6.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 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 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u>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u>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 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u>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과 기술평가의 방법· 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u>에 관한 사항 8. 제5호다목 및 바목에 따 른 <u>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u> 9.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 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 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 의에 부치는 사항	4.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 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 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u>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u>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 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 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 자 선정을 위한 <u>사업수 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u>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 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 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 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u>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 ·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u>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 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18조

다음, 자문위원회⁷⁾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⁸⁾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둘 수 있는 기구로,

자문위원은 각 심의위원회의 위원, 다른 발주청의 자문위원회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그 밖의 사항은 발주청이 정하며⁹⁾,

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발주청이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자문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응답¹⁰⁾하는데, 앞에서 살펴 본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계약 법령과 관련한 사항들 중에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어¹¹⁾, 자문위원회가 심의위원회와 유

7)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8)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우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훈령) 제6조]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③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정의)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음.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비교 】

구분	기술자문위원회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발주청이 정함)	-위원장: 1명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위원장: 1명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위원: 600명 이내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 필요시 1/5 범위에서 사 안별로 일시적 추가 임 명·위촉 가능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50명 이내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특별시는 300명 이내) ※ 필요시 1/5 범위에서 사 안별로 일시적 추가 임 명·위촉 가능
위원 자격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특별심의위원회 위원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 위원회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 는 사람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다른 시·도의 지방심의 위원회 위원 -특별심의위원회 위원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 는 사람 -해당 분야의 전문가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같음할 수 있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심의 및 점수 평가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같음할 수 있다.

제10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심의 및 점수평가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평가로 같음할 수 있다.

구분	기술자문위원회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임기	민간위원: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50~150명)를 구성·운영 ※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일시적 추가 임명·위촉 가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 정수의 1/2 이내)	-분과위원회: 기준정비분과(100명 이내), 설계심의분과(400명 이내) 구성·운영 가능 -소위원회는 5명~40명으로 구성·운영 가능	-분과위원회: 지방설계심의분과(50~70명) 구성·운영 가능 ※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일시적 추가 임명·위촉 가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 정수의 2/5 이내)
기능 (심의 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구분	기술자문위원회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	6.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	4.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

구분	기술자문위원회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9조

*주: 중앙건설기술심의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회는 기술자문위원회와 유사·동일하거나 비교되는 사항을 연계하여 기재함.

그런데,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계약 법령과 관련 심의사항들은 해당 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며,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중요 사항이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동 위원회들이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 선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 위원회들의 위원 위촉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거나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보들을 통해 부적절한

위원이 위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

한편, 개정안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12)에 준하는 범죄경력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준하는’ 또는 ‘등’의 용어와 관련하여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1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6조(신원조사)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삭제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삭제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5조(권한의 위탁)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범죄경력’의 제공 요청 근거 마련이 주된 취지라면, 유사 입법례¹³⁾를 참고하여 인용 조항 등 일부 조문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② 조직위원회는 등록카드를 발급받으려는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그 결격사유의 유무를 조직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회계사법」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치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치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치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 및 보고 의무 민간 확대(안 제48조 및 제80조)

현행	개정안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u>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u> 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u>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u> , <u>건설사업자</u> 또는 <u>주택건설등록업자</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업무----- --- <u>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u> 는 ----- ----- -----.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u>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u> , <u>건설사업자</u> 또는 <u>주택건설등록업자</u> 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u>발주청에 보고</u> 하여야 한다.	② ----- ----- ----- ----- ----- <u>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u>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u>발주청</u> 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u>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u> 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u>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u> 는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u>발주청</u> 은 해당 조치의 원인이 <u>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u> 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	③ ----- ----- <u>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의 장</u> ----- <u>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발주자(인·허가기관의 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u> ---. ----- <u>발주자</u> 는 ----- ----- -----

현행	개정안
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80조(시정명령) (생략) <신설>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0조(시정명령)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현재 공공공사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설계도서 검토, 검토결과의 발주청¹⁴⁾ 제출 의무를 민간공사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48조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1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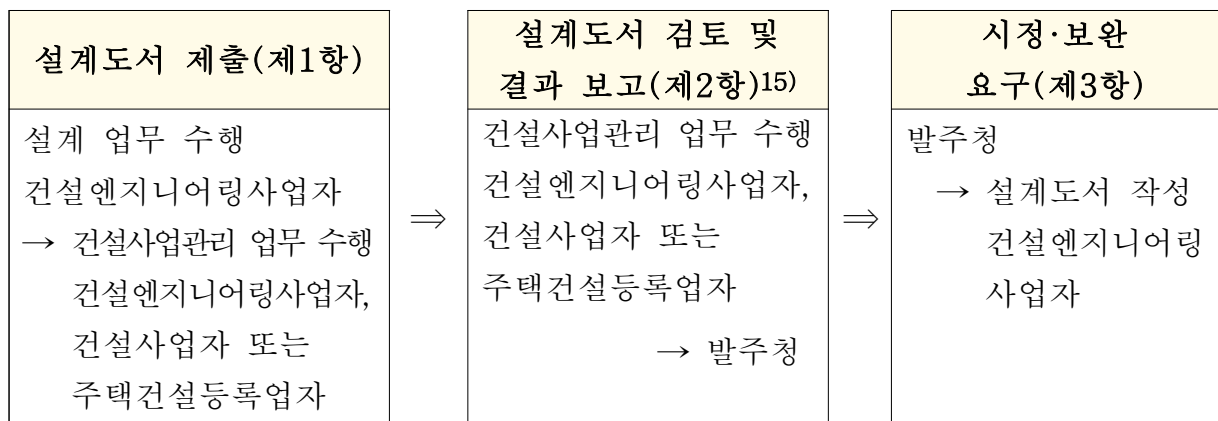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제1항),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는 건설공사 시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며(제2항),

설계도서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에게는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조치를 요구(제3항)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제48조에 따른 설계도서 오류 확인 및 시정·보완 절차 】



15) 제48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결과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에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의무 위반: 6개월 이내 영업정지(「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의무 위반: 시정명령(「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 후 시정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시정명령 미이행 건설사업자: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시정명령 미이행 주택건설등록업자: 1년 이내 영업정지(「주택법」 제8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②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절차는 건설공사의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오류를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발주청’¹⁶⁾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의 기관이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임.

그런데, 2022년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 외벽 붕괴, 2023년 인천광역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주차장 붕괴 등의 건설사고가

제80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법」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발생하였고, 주차장 붕괴 사고의 경우에는 조사 결과 설계-시공-감리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¹⁷⁾되어,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정부에서는 2023년 12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¹⁸⁾하였으며,

이 중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은 설계-시공-감리 간 견제·균형을 확보하고, 안전·품질을 최우선으로 한 시스템 개편 등을 전략으로 하여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설계와 관련해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③구조설계 책임 및 역량 강화, ④사업단계별 설계 검증체계 강화, ⑤무량판 구조 부실시공 재발 방지의 3개 과제가 해당됨.

17)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7.5.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②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③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하였다.

18)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 구축…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2.11.

【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2023.12.)의 기본 방향 】

목표	건설 카르텔 혁파를 통한 건설산업 시스템 정상화		
전략	①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견제 시스템Check & Balance 구축 ② 안전, 품질 최우선 원칙 확립 및 스마트 건설 혁신 도모		
전략 및 과제	전 략	세부 추진과제	
	감리-설계-시공 간 견제·균형 확보	감 리	① 건축주로부터 독립성 확보 ② 감리인증·전문법인 등 전문성 강화
		설 계	③ 구조설계 책임 및 역량 강화 ④ 사업단계별 설계 검증체계 강화 ⑤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 재발 방지
		시 공	⑥ 주요공정 의무점검 제도 도입 ⑦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후속조치 추진 ⑧ 건설현장 자재·인력 관리 강화
	안전·품질 중심 시스템 개편	① 적정 공기·대가 등 발주 환경 개선 ② 안전·품질 정보 공개 및 활용 ③ 부실에 대한 경제적 비용 확대 ④ 정부·지자체의 현장 감독 강화	
	K-건설 혁신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① 모듈화를 통한 생산방식 전환 ② 건설현장 자동화 기반 강화 ③ 건설산업 디지털화 촉진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동 세부추진 과제 중 ④사업단계별 설계 검증체계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공공공사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오류 확인 및 시정·보완의 검증체계를 민간공사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공 전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설계도서의 대상에 현재는 제외되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¹⁹⁾라 함)를 포함하고, 이에 따라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

19)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건축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지니어링사업자에 건축사사무소설계자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48조제1항),

설계도서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현행 발주청(공공) 외에 민간의 발주자²⁰⁾와 인·허가기관의 장을 추가하고(안 제48조제2항),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 민간 발주자와 인·허가기관의 장을 추가하며, 민간 발주자에 대해서도 인·허가기관의 장이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8조제3항),

설계도서 검토 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

-
-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0) 발주자는 공공공사의 발주자(발주청)와 민간공사의 발주자를 함께 지칭하는 용어로, 발주청을 포함하는 개념임.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는 ‘발주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발주자’로 변경하여 민간 발주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발주청과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 권한을 갖는 자 등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인·허가기관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안 제80조제2항)으로,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공공공사와 같은 설계도서 검증 절차를 거치
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설계도서 오류 확인 및 시정·보완의
각 단계별 주체·대상 등 비교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설계도서 제출 (안 제48조 제1항)	<u>설계</u> 업무 수행 <u>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u> → 건설사업 관리 업무 수행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u>설계(「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설계 포함, 제2항 및 제 3항에서 같음)</u> 업무 수행 <u>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u>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 사사무소개설자 포함),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시공 전 오류 확 인 설계도서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설계 포함 *규율 대상에 건 축설계가 포함되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개설자 포 함
설계도서 검토 및 결과보고 (안 제48조 제2항)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u>발주청</u>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u>발주자</u> 및 <u>인·허가기관의 장</u>	*설계도서 검토 결과 보고 대상 에 발주청(공공) 외에 민간 발주 자 포함 *인·허가기관에도 검토결과를 보고 하도록 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설계도서 시정·보완 요구 (안 제48조 제3항)	발주청 → 설계도서 작성 <u>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u>	<u>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의 장</u> → 설계도서 작성 <u>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건축사 법」에 따른 건축사 사무소개설자 포함),</u> <u>발주자(인허가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에 한정)</u>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 시정·보완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 발주청(공공) 외에 민간 발주자 및 인·허가기관 포함 *발주자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는 인·허가기관만 가능
설계도서 검토 후 보고 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등 (안 제80조)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국토교통부장관, <u>인·허가기관의 장</u>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도서 검토 후 보고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인·허가기관도 시정명령 등 가능

한편, 동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는,

① 종합건설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설계도서 검토를 위한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이를 외주로 수행하는 비용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계약금액에 설계도서 검토 비용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② 설계도서 검토 결과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공공공사는 계약금액 조정이 법률에 명시²¹⁾되어 있으나, 민간공사는 계약금액 조정이 의무

화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③ 설계도서 검토, 발주자 및 인·허가기관 보고 및 업무처리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공사일정이 지연되어 공기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의 검토기간을 공사기간에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